



## 사업 가능성 검토를 위해 공개된 정보의 영업비밀 해당성 및 부정취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사건

43

###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지적재산고등법원	사건번호	평성20년(네) 제10006호
판결 일자	2008. 6. 24.	판결 결과	항소 기각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텔레파크		
피고 (항소인)	그레이트인포메이션 주식회사		
참조 법령			
영업 비밀	바코드·터치 패널에 의한 선불카드의 카드레스 발권사업에 관한 사업 제휴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공개된 정보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비밀유지계약, 영업비밀 취득·사용, 부정경쟁행위		

### 02 사건 개요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취·사용하고, 피고가 원고와 경합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의도를 숨기고 비밀유지계약을 합의해제 하여 업무제휴협상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계약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으며, 피고가 문서를 배포하고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원고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이에 항소인(원심 원고. 이하 "원고")이 피항소인(원심 피고. 이하 "피고")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계약의 부당한 파기 및 신용훼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금 지불과 허위사실 배포 금지를 요청한 사안이다.

[원판결] 피고의 본건 영업비밀(기술상, 영업상의 비밀정보)를 사용한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부정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본건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의 본건 영업비밀에 포함되는 본건 비밀유지계약에서 본 비밀정보를 본건 피고서비스에 대한 목적 외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본건 비밀유지계약이라 볼 수 없다. 본건 비밀유지계약과 같은 묵비의무에 따른다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되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상품매매기본계약서상의 비밀유지의무 기타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부정경쟁체결이 본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취득했다거나 장차 동종서비스에 이를 사용할 목적이라 인정할 수 없다. 피고가 본건 영업비밀을 사용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고, 본건 비밀유지계약을 원고와 합의하고 종료시키고, 원고와의 사업제휴협상을 중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지속적 계약 파기로서의 불법행위라 볼 수 없다. 특허결정이 될 전망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본건 문서의 배포는 허위사실 고지로 인정되나, 이미 특허로 출원이 되어 있고 원고에게 구체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청구도 이유 없다. 이에 신용훼손과 이에 따른 손해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03 주요 쟁점

원 고 (피항소인)	⇔	피 고 (항소인)
<p>피고는 카드레스 선불서비스를 시작하는 2005년 봄 무렵까지 일체 시스템 개발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04년 12월까지 이호시스템, 로호시스템을 책정했고, 피고가 이호시스템, 로호시스템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본건 영업비밀을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이다.</p> <p>피고가 원고를 제외하고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서클K산크스에 로비한 것에 의한 것이다. 피고가 2004년 9월 이후 원고에게 정보의 공개를 받은 것은 정보의 사취에 해당한다.</p>	⇔	<p>영업비밀을 일체 판단의 재료로 하지 않고, 마케팅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p> <p>이호시스템 및 로호시스템은 심플한 구조이며, 당업자라면 쉽게 설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얻은 어떠한 비밀정보 또는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이호시스템 및 로호시스템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p> <p>원고는 본건 영업비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며, 본건 영업비밀의 공개를 받은 E들의 본건 영업비밀 사용행위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지 않는다.</p> <p>원고가 F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영업비밀은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F를 정직원이 아니라 시급제 계약직으로 고용한 것은 피고가 원고의 정보를 사취할 목적으로 F를 고용한 것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피고가 F에게 피고에 입사를 권유한 2004년 9월 시점에서 카드레스 선불서비스를 공개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를 받은 정보는 사업제휴를 하는 경우에 예정</p>

본건 비밀유지계약은 피고가 경업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본건 비밀유지계약을 발단으로 하는 지속적 계약관계를 파기하고 카드레스 선불서비스를 시작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특허관련) 피고 문서를 교부받은 서클k산 크스가 원고에 대한 의심이 생겨 원고에게 사실확인을 했기 때문에 원고의 영업상 이익은 손상되고, 원고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특허관련) 피고 문서를 교부받은 서클k산 크스가 원고에 대한 의심이 생겨 원고에게 사실확인을 했기 때문에 원고의 영업상 이익은 손상되고, 원고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된 장래의 비용·수입 분배조건을 상품별로 표시한 것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희망을 고지한 것에 지나지 않고 내용 및 송부취지를 보면 피고가 이를 불법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본건 비밀유지계약은 경업금지의무를 당사자에게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카드레스 선불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건 문서의 내용에 대한 진위를 묻는 질문을 받은 원고대표자가 A에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특허 취득 불가능 가능성)99.9%라는 숫자 등에 대해 서로 웃었다고 하기 때문에, 피고가 본건 문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에 의해 원고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본건 문서의 내용에 대한 진위를 묻는 질문을 받은 원고대표자가 A에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특허 취득 불가능 가능성)99.9%라는 숫자 등에 대해 서로 웃었다고 하기 때문에, 피고가 본건 문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에 의해 원고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

## 04 판결 요지

---

일반적으로 신규사업에 참여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상, 비용, 이익 등을 시산하고, 시장의 경쟁환경, 신규개척의 여지 등 마케팅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본건 영업비밀중의 영업에 관한 정보 중, 계약조건이나 상품별 판매수수료율·이익률 등의 정보는 계약의 당사자에 의해 변동하는 것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판매실적이나 상품별 이익률, 편의점체인과의 협상상황 등의 정보는 그 자체가 피고에게 있어, 마케팅 분석을 할 때 항상 필요한 정보라고까지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마케팅 분석을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개 받은 영업비밀 중에 어느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모두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본건 영업비밀을 본건 피고서비스를 위해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

선불서비스 구성의 개요를 추상적으로 나타낸 것에 그치는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면, 당사자라면 그 작성에는 그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2004년 12월 시점에서 상기 이호 시스템, 로호 시스템이 작성되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이호 시스템, 로호 시스템이나 본건 피고서비스에 실제로 사용되었던 시스템의 작성을 위해 본건 영업비밀이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

피고는 2004년 12월 13일경 본건 각서에 의해 본건 비밀유지계약을 종료시키기 이전부터, 원고와 동사와 정보교환을 하거나, 동사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 PIN코드의 구입창구를 피고에게 일원화하는 것은 피고가 PIN코드의 판매에 의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에게 있어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본건 피고서비스에 실제로 사용되는 시스템의 개발을 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고, 그것들이 2004년 9월 이전이었다고 인정될 만한 증거는 없고, 본건 피고서비스를 시작할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인정될 수 없고, 그 외에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정보의 공개를 받은 것이 정보의 사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본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인해 피고가 사업제휴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후의 경위를 보아도, 피고가 사업제휴를 할 의무를 지고,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지는 것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고, 원고의 기대에 반하여 사업제휴가 성립되지 않아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

특허사정이나 설정등록이 되는지 여부는 그 가능성이 적다는 등의 피고의 예상과 평가를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설정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가 허위 사실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피고가 본건 문서를 써클K산크스에 교부한 것은 허위 사실의 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

## 05 Key Point

---

마케팅 정보로서 고객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의 취득·부정사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영업비밀 중 영업에 관한 정보 중 계약조건이나 상품별 판매수수료율·이익률, 사업 참여 여부 검토 단계, 회사의 규모, 경영상태, 경제적 환경, 고객과의 관계, 사업전개의 예정 등은 제반 상황에 따라 마케팅 분석 시 항상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기도 하다.

---

---

중요한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입증근거가 있어야 인정된다.

---

본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인해 피고가 사업제휴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